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박양현 사회·도시위원장의 12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3. 18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전부진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법률용어 정비 및 직제개편으로 서기의 직책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본 조례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항중 각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4항중 서기는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3. 전문위원 설명요지(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와 소작농의 임차료에 관한 사항 규정한 조례로, 위원회 운영과 임차료 상한가액이 규정되어 있음.

이 조례 제10조제1항중 "각 위원회"라 조문이 있는데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위원회의 서기를 산업계장으로 당연직 의무규정이나 동 직위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경제계장으로 되었으므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됨.

4. 토론요지

없음.

5. 수정안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각 위원회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서기는 다음에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 서기는 <u>산업계장</u>이 된다.</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삭제).....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역경제계장</u></p>